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148

발의연월일: 2024. 10. 31.

발 의 자:정태호·이학영·조정식

임광현 • 황명선 • 김영배

이수진 · 강준현 · 이연희

오세희 • 박홍근 • 김현정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(노란우산공제)는 소기업·소상공인의 폐업· 은퇴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에 필요한 자 금 마련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, 소득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이자액 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의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음.

그러나 공제의 장기간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임의해약 시 소득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이자액을 합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방식이 장기가입자의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10년 이상 공제부금을 납입한 장기가입자의 경우 임의해약 시 공제금 수령자와 같이 퇴직소득세의 방식으로 과세함으로써 공제제도 의 취지에 맞게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86조의3제4항 단 서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6조의3제4항 단서 중 "해외이주"를 "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및 해외이주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) 제86조의3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계약을 해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 이 경우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는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「소득세법」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소득세를 부과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6조의3(소기업・소상공인 공	제86조의3(소기업·소상공인 공
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)	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)
① ~ ③ (생 략)	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	4
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	
업・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	
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	
따라 계산한 금액을 「소득세	
법」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	
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.	
다만, <u>해외이주</u> 등 대통령령으	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
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	20개월 이상인 공제가입자가
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.	계약을 해지한 경우 및 해외이
	<u> 주</u>
⑤ ~ ⑧ (생 략)	⑤ ~ ⑧ (현행과 같음)